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5171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A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48,490원 및 그 중 5,736,500원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의 2019. 10.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영주등기소 2019. 10. 31. 접수 제1217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9.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C조합로부터 10,000,000원의 정책운영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0%),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2020. 8. 21. 신용관리정보등록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1. 10. 15. C조합에 5,736,5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311,99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9. 10. 31.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7,048,490원 및 그 중 5,736,500원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11. 26.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대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인 2020. 8. 21. 신용관리등록처리된 사실, 피고 A은 위와 같이 신용관리등록처리된 이후에도 C조합에 2021. 5. 26.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별지